

---

대한민국의 11차, 12차 정부보고서에 대한

##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최종견해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제63차 회기  
2003년 8월 4-22일

---

### 대한민국

1. 위원회는 통합문서로 제출된 제11차·12차 대한민국 이행보고서(CERD/C/426/Add.2)를 2003년 8월 8일과 11일에 열린 1592회, 1593회 회의(CERD/C/SR/1592&1593)에서 심의하였다. 제11차 이행보고서의 제출시한은 2000년 1월 4일이었으며, 제12차 이행보고서의 제출시한은 2002년 1월 4일이었다. 위원회는 2003년 8월 18일에 열린 1604회 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최종견해를 채택하였다.

#### A. 서문

2. 위원회는 대한민국의 이행보고서 제출을 환영하며 정부대표단이 구두 및 서면으로 제공한 추가정보들을 환영한다.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보고한 개선사항들에 대해 만족을 표한다. 또한 위원회는 심의회의에 대규모의 정부대표단이 참석해 준 것을 비롯하여 위원회의 질문에 대해 대표단의 각 일원이 솔직하고 건설적인 답변을 제공해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한다.

#### B. 긍정적 측면들

3. 위원회는 지난 2001년 제정된 국가인권위원회법을 통해 국가인권기구(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가 설립된 것을 만족스럽게 생각한다.
4. 위원회는 지난 2003년 7월 채택된 고용허가제 입법을 통해 앞으로 외국인노동자들이

---

국내노동자들과 동일한 노동관련 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을 환영한다. 또한 위원회는 교육관련 규정이 개정되어 불법체류자의 자녀를 비롯한 의무교육연령의 외국인 아동들이 학교 교육에 대한 동등한 접근성을 가지게 된 것을 환영한다.

5. 위원회는 2002년 4월 출입국관련규정이 개정되어 화교를 비롯한 외국인에 대해 영주 거주(F-5) 체류자격이 신설된 것을 환영한다.
6. 위원회는 난민제도 및 난민지위심사과정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들, 특히 난민인정협의회에 시민사회의 위원들이 위촉되어 활동하게 된 점과 난민들에게 제공되는 사회적 처우 및 노동시장에 대한 접근성이 증가된 점을 만족스럽게 생각한다.

### C. 우려 및 권고사항

7. 위원회는 인구의 동질성 즉 단일민족성에 관한 정부의 관점에 주목한다. 그러나 동시에 위원회는 화교를 비롯하여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여타 인종적 소수자에 관해 이행보고서에서 언급된 정보들을 주목한다.

대한민국 사회의 인종적 구성분포에 관한 구체적인 통계자료가 없는 것과 관련하여, 위원회는, ‘이행보고서의 형식과 내용에 관한 일반지침’ 제8항에도 언급되어 있는 바와 같이 인종에 따른 인구분포 자료를 차기 이행보고서에서 제공해 줄 것을 대한민국에 권고하며, 위원회 일반권고 8호(특정 인종 및 종족 집단의 자기 인지)의 내용에 관하여 대한민국의 주의를 환기시키고자 한다. 또한 백정(白丁) 집단의 상황에 관한 정보 취합에 있어, 위원회 일반권고 29호(가문에 따른 차별)의 내용을 참작할 것을 제안한다.

8. 위원회는 이행보고서에 인종차별행위들, 피해자의 진정이나 사법적 대응에 관한 정보들이 부족하다는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인종차별 피해자의 고소, 고발이나 소송 제기가 없다는 것은 관련 입법의 부재, 사법구제방법에 대한 인식 부족, 또는 관련당국의 기소의지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일 수 있다는 점을 대한민국에 상기시키고자 한다.

위원회는 인종차별 사건 및 관련 현행법이 적용된 사건의 수사 및 기소 현황, 부과된

---

형벌 등을 성별에 따라 분류한 자료가 차기 이행보고서에 포함되기를 요청한다. 또한 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2항의 ‘불합리한 차별(unreasonable discrimination)’이라는 용어가 현실에서 어떻게 해석·적용되고 있는지에 관해 더욱더 자세한 정보를 요청하는 바이다.

9. 위원회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는 반면, 대한민국의 국내법이 여전히 협약 제4조의 요구들(인종차별행위에 대한 처벌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대한민국은 협약 제4조의 이행에 관한 위원회의 일반권고 15호의 내용에 비추어 국내법률을 검토해야 하며, 또한 협약 제4조에 부합하도록 인종차별 및 인종혐오 사건을 다루는 특정한 법률을 도입해야 한다.

10. 위원회는 산업연수생 제도 하의 외국인 노동자들과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이 협약 제5조의 권리들을 완전히 향유하고 있지 못한 현실에 대해 여전히 우려를 표한다.

위원회는 모든 이주노동자의 상황 특히 신체의 안전과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들을 계속적으로 취해 나갈 것을 대한민국에 권고한다. 또한 산업연수생, 미등록노동자, 난민 및 난민신청인을 비롯한 모든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협약 제5조가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에 관한 정보를 차기 이행보고서에 포함시킬 것을 권고한다.

11. 외국인여성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대한민국의 노력에 주목함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성매매를 목적으로 외국인 여성들이 대한민국으로 인신매매되는 상황에 대해 여전히 우려를 표한다. 대한민국은 인신매매 방지와 피해자에 대한 지원—가능한 한 외국인 여성의 모국어를 통한 지원—을 위한 현재의 노력을 확대, 강화해야 한다.

12. 위원회는 차기 이행보고서 준비시 인종차별철폐의 분야에서 활동하는 시민사회단체와 협의할 것을 대한민국 정부에 권장한다.

13. 위원회는 인종차별행위에 관한 국내적 구제조치, 차별사건에 있어 배상을 위한 법적 수단, 협약 제14조에 따른 개인청원절차 등에 관한 정보가 대한민국 내에 널리 배포

---

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증진되어야 함을 권고한다.

14. 협약 특히 제2조부터 제7조의 내용을 국내의 법질서에서 이행함에 있어, 더반 세계 인종차별철폐대회 선언 및 행동계획의 관련부분들이 고려되어야 함을 대한민국에 권고한다. 또한 더반 세계인종차별철폐대회 선언 및 행동계획을 국내 차원에서 이행하기 위한 국가행동계획 및 기타 조치들에 관한 정보를 차기 이행보고서에 포함시킬 것을 권고한다.
15. 당사국 이행보고서를 국문으로 작성하여 보고서가 위원회에 제출되는 시점부터 일반대중이 그 내용을 잘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하며, 위원회의 최종견해 역시 국문으로 배포되어야 함을 대한민국에 권고한다.
16. 제13차, 14차 이행보고서를 그 제출시한인 2006년 1월 4일까지 통합보고서의 형태로 위원회에 제출해 줄 것과 보고서 작성시 본 최종견해에 제기된 모든 사항들에 대한 정보를 다루어 줄 것을 대한민국에 권고한다.

[번역: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